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15(금) 10:00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91호
- 나. 제 출 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3. 9. 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19241호, 2023. 3. 21. 공포, 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2023. 3. 21. 지방자치법 개정(2023. 9. 22. 시행)에 의거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그 의사를 종합·조정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교섭단체의 정의(안 제2조)
 -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함.

- 교섭단체의 구성(안 제3조)
 -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 의원 각 1명씩 둘 수 있음.

-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조)

-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교섭단체의 지원(안 제5조)

-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지원,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지원,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비 및 인력 등의 지원, 이외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경우 법적근거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23. 3. 21. 개정(2023. 9. 22. 시행)되어 교섭단체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2023. 9. 1. 기준 전국 53개(서울 8개 포함)에 달하는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에 대한 조례 등을 규정하여 운영중임.

○ 우리구 의회에서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그 실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역할이 상충될 우려와,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의원총회의 형해화 가능성 등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또는 교섭단체 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1. 서울시 자치구의의회 현황 1부

2. 관련 법령 1부.

【붙임 1】

서울시 자치구의회 현황

- 교섭단체 관련 자치법규 : 서울시 포함 8개(조례 6개, 규칙 2개)

〈2023. 9. 1 기준〉

연번	지자체	구분	제명	구성요건	제정일자
1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10명 이상	2015. 1. 2.
2	노원	조례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제31조)	5명 이상	2022. 1. 6.
3	강동	조례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3명 이상	2022. 9. 7.
4	서대문	규칙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명 이상	2022. 10. 12.
5	성북	규칙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명 이상	2023. 3. 9.
6	양천	조례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3명 이상	2023. 4. 20.
7	중구	조례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2023. 7. 25.
8	광진	조례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명 이상	2023. 7. 28.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63조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